

Editorial Comment: 노인 수발

윤 가 현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노화로 인하여 심신이 쇠약해진 어르신을 돌보는 행위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영문으로는 “care”라 하고, 일본에서는 영문의 의미를 介護(개호)라는 한자어를 이용해 표현하고 있다. 반면 우리말의 표현은 매우 다양하다. 우선 전통사회에서는 효를 근간으로 해서 노부모를 친절히 모신다는 차원에서 이를 봉양이라 했지만, 근래에는 봉양의 의미는 거의 사라진 대신 부양, 간호, 간병, 병구완, 보호, 수발, 시중 등 여러 가지 용어들이 사용되어 왔다.

노인인구의 급증으로 노인요양정책이 제도적으로 완비될 필요가 있어서 근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장기요양제도의 시안 등이 마련되었고, 이에 지난해에도 본 학회지의 editorial comment 주제로 장기간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또 그 가족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차원의 장기요양제도를 선택하기도 했다 (윤가현, 2004a). 우리나라는 최근 일본의 개호보험(介護保險)제도와 유사한 노인요양보장정책을 추진하면서 제도의 명칭이 문제로 제기되기도 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노인요양보장제도가 아니라 “노인수발보장제도”로 개칭해 2008년 7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며, 이 제도의 실시를 위해 2005년 12월 중순 현재 노인수발보장법이 입법 추진 중에 있었다.

Care나 介護라는 용어에 가장 적합한 우리말로 수발이 선택된 셈인데, 실제로 앞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용어 중에서 한자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수발과 시중이다. 또 수발의 사전적 의미가 “신변 가까

이에서 여러 가지 시중을 든다.”는 것이므로 시중은 수발에 포함된다. 노인수발보장법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 전체 그리고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과 같은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타인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자에게 환자의 본인부담률 20% 정도(저소득층은 더 낮은 비율)에서 의료, 간호 등 수발혜택을 받게 한다고 한다.

명칭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노인수발보장제도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노인요양시설을 갖추는 일이 급선무이다. 시설이 삶의 터전과 가까운 곳에 설치되어야 수발이 필요한 어르신이나 그 가족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이에 정부에서는 시설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농어촌지역에는 폐교 등을 이용하여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설치하려는 뜻도 보이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사이에 의지 부족이나 재정부족 등을 내세워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걱정이다.

시설을 갖춘 후에도 노인요양보장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수발의 대상과 범위,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 등이 분명하게 공지되어야 하고, 노인학대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발서비스 지침, 전문 인력의 양성과 배치, 시설기관의 운영지침 등이 시행착오를 덜 거듭하는 차원에서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윤가현, 2004b). 이에 한국노년학연구 14권에도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몇 편의 논단을 실었다.

참 고 문 헌

- 윤가현 (2004a). Editorial comment: 장기요양제도. *한국노년학연구*, 13, 3-4.
- 윤가현 (2004b). 시설에서의 노인학대와 사회복지정책방안. *노인복지정책연구총서* (한국노인문제연구소 발간), 32, 79-117.